

제주지방법원 2021. 7. 20 선고 2020가단5784 판결 [사해행위취소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

피 고 1. B

2. C 주식회사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진

변 론 종 결 2021. 5. 25.

판 결 선 고 2021. 7. 20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‘피고 회사’라 한다)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16. 12. 27. 체결한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.
3.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6. 12. 28. 접수 제83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회사는 2016. 5. 19. 원고에게, E건물 신축공사(공사대금 1억 1,000만 원), F 원룸 신축현장(공사대금 5,000만 원)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 총 1억 6,000만 원을 준공 및 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것을 ‘공사대금 지급 확인서’로 약정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공사대금채권’이라 한다),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‘E건물 신축 공사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2016. 7. 6.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, F 원룸에 대해서는 2016. 10. 4.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7. 5.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. 8. 9.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.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2. 27.자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하여 2016. 12. 28. 가등기권자를 피고 D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고, 위 가등기에 대하여 2019. 9. 18.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(2019카단1080)에 의하여 채권자 원고,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청구권인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2호증, 을 제1 내지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

원고는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 B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

구하는 한편,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1,000만 원은 그 변제기가 2016. 8. 6., 5,000만 원은 2016. 11. 4.이고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2020. 9. 8.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한다.

3. 판단

가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, 피고 D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‘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’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,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,000만 원의 변제기는 보존등기 후 1개월인 2016. 8. 6., 5,000만 원의 변제기는 보존등기 후 1개월인 2016. 11. 4.이고,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0. 9. 8.에서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, 그로 인해 연대보증채권 또한 소멸되었다할 것이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,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부존재하므로,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장욱